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894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황운하 · 서왕진 · 정춘생  
김준형 · 차규근 · 이강일  
장종태 · 강경숙 · 신장식  
김선민 · 이해민 · 백선희  
김재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 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1조제1호).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제51조의2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u>&lt;신    설&gt;</u> | 제51조의2(벌칙) -----<br>-----<br>-----<br>-----.                                                      |
| <u>1. ~ 6.</u> (생    략)                                                                   | <u>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u><br><u>2. ~ 7.</u> (현행 제1호부터 6호까지와 같음) |